

대규모 집회시위유형 비교 연구

2009-16 | 책임연구보고서

대규모 집회시위유형 비교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최 경 환

<목 차>

I. 서론

II. 대규모 집회시위의 특징

1. 전체 사회영역으로 확대
2. 도심교통 마비
3.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증가

III. 대규모 집회시위의 유형

1. 지역이익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
2. 반정부 성향의 대규모 집회시위
3. 국가협상반대의 대규모 집회시위
4. 외국의 대규모 집회시위유형

IV. 경찰의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방향

1.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2.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V. 결론

I. 서론

대규모 집회시위는 2006년 한·미FTA 반대 집회시위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시위, 2007년 8·15 민족통일대축전 집회시위,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 2009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농민단체의 전국농민대회 등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특별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와 달리, 모여서 행진할 때는 시위¹⁾로 분류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시위는 일반적인 집회시위와 비교해서 어떤 다른 특징보다는 규모면에서 훨씬 크다.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²⁾ 제7조(부대건재 유지 및 비상근무) 2항에 지방경찰청장이 대규모 집회시위시 경찰관기동대를 비상근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지침의 ‘지휘관의 현장임장 기준’에는 시위대 천명이상인 경우에는 현장임장 지휘관이 지방청장 또는 차장이 지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규모가 보통 1,000명이상인 경우를 대규모집회시위로 규정할 수 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시위문화가 폭력적으로 흐르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을

1) 시위란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신) 제2조(정의) 2항.

2) 2009. 7. 22, 경찰청훈령 제 544호.

수 있지만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폭력, 불법 시위이지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문화가 폭력이나 불법시위로 변화되었을 때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불법이나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매우 엄청나게 크다. 폭력적인 불법 대규모 집회시위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야간 시위 금지 역시 위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었다. "현행 집시법은 공공 질서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면서, 특히 야간 옥외집회와 달리 야간 옥외집회시위는 학문이나 예술 등의 목적이어도 전면 금지되고 있어 헌법상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지난 촛불집회는 이른바 야간 옥외집회시위였다. 촛불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³⁾하고 있어, 예술 등의 적용의 배제 조항⁴⁾을 이용해 주로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8년 5월 2일 쇠고기 협상 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처음 평화적 집회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폭력적인 불법집회시위로 강행되었다.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과격 양상을 띤 대규모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 및 시위 유형별에 따른 보다 더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평화적인 준법집회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찬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엄정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본 대응원칙 등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 불법폭력적인 대규모 시위에 대한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현장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 집회시위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대규모 집회시위 유형별 비교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향 및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준법적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대규모 집회시위의 특징

1. 전체 사회영역으로 확대

대규모 집회시위가 모든 사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집회시위의 참여자가 촛불시위에서처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고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도 또한 이전의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으로부터 화이트칼라, 그리고 NGO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참여자의 욕구와 이익 또한 다양하다.

이제는 대규모 집단시위가 노동자와 농민, 빈민, 그리고 운동권 등의 특정 이념이나 목적, 또한 사회공익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함께 점차 전체 사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5-7월

의 쇄고기 협상문제로 인한 촛불시위처럼 시민의 먹거리 문제와 관련한 일상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민들이 지난 촛불시위로 인해 집회시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대규모 집회시위가 전체 사회영역으로 확대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규모 크기와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는 반복적이며 장기적인 집회시위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집단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시위로 전환되고 그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규모 크기와 빈도수와 관련하여 이러한 추세는 <표 1>과 같이 2008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집회시위 총 13,406회에 3,092,069명이 참가하여 2007년 대비 집회시위 회수면에서는 12.6%, 참여인원면에서는 32.4%가 증가되었다.

<표 1> 2008년 집회·시위 발생현황⁵⁾

구분/ 연도별	전체 집회시위		동원경력	
	회수(회)	참가인원(명)	중대	경력대비율
'08년	13,406	3,082,069	28,471	0.83
'07년	11,094	2,327,608	29,664	1.34
증감대비	1,502(12.6%)	754,461(32.4%)	-1,193(-4.0%)	-0.51(-38.1%)

2008년 전체 집회시위 회수 13,406회 대비 참가인원 3,082,069명을 단순 계산하면, 집회시위 1회 평균 약 230명이 참가한 셈이다. 2007년도에는 1회 집회시위에 평균 210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2008년도에는 1회 집회시위시 2007년 대비 평균 20명이 더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5) 경찰청 「2009 경찰백서」(경찰청, 2009), 245면.

전체 집회시위로 보면 불법폭력시위는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정착되는 추세이다. 불법집회시위란 집회신고서상(신고불요 포함)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로 평화적인 양상의 시위라도 불법이다. 2008년 하반기의 대규모 집회였던 노동자대회(11.9)와 전국농민대회(11.25) 모두 평화로운 집회로 마무리되었다. 문민정부시절 대규모 집회시위시 쇠파이프 등 과격양상은 전체 시위의 9%를 차지하였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폭력시위가 전체 시위 1%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민들의 준법의식속에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그치지만, 때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집단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폭력시위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이러한 폭력시위는 반정부적 투쟁 성격의 대규모 집회시위시 증가하고 있다.

집회시위자중 일부는 폭력시위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 촛불시위에서와 같이 쇠고기 협상 문제로 시작된 평화시위가 일순간, 쇠파이프와 각목과 깃발을 들고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일부 전문시위대⁶⁾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폭력 시위로 둔갑하였다. 강경 투쟁 노선으로 일관한 일부 전문 시위대는 대다수 시위 참여자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선전, 선동하였다. 그러한 집회 주최자나 단체의 성향이 폭력시위를 확대, 확산시키며, 폭력시위의 반복을 가져오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과격한 일부단체는 촛불시위를 정치적 의도로 정권 퇴진운동으로 이용하였다.

물론 2005년~2006년에도 사제전차, 3m길이의 쇠파이프, 물푸레나무,

6) 전문 시위대는 화염병, 쇠파이프와 각목, 삽을 사전에 준비하여, 경찰을 공격하였다. 일부 극렬 행위자는 경찰에 쇠조각, 빙초산을 던지며, 새총이나 빼앗은 방패나 경찰봉으로 공격하였다. 철근 절단기, 삽, 사다리차로 차벽으로 세운 경찰버스를 심하게 훼손하며, 모래주머니를 쏟아 경찰버스에 오르며,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어내렸다. 경찰의 물포에 맞서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맞대응하였다. 철근 절단기를 경찰버스를 분해하고, 소화기 분무기로 공격하였다.

죽봉, 새총 등 무기수준의 불법시위용품이 등장하였다. 부산사태시에는 화염병, 염산병, 쇠스랑이, 광주농민대회시에는 쇠파이프와 죽봉이, 울산 비정규근로자집회시에는 쇠파이프, 수레, 가스통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전문 시위대의 불법시위용품에 의한 과격한 시위 주도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집회·시위 총횡수와 대비하여 불법·폭력 시위횡수를 보면, 2000년(13,102/105), 2001년(13,083/215), 2002년(10,165/118), 2003년(11,837/134), 2004년(11,338/91), 2005년(11,306/77), 2006년(10,368/62), 2007년(11,904/64), 2008년(13,406/89)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은 전체 11,904건중 폭력시위 발생은 64건으로 0.5%에 불과하였고, 2008년은 전체 13,406건중 불법폭력시위가 89건으로 0.66%로 증가하였다. <표 2>는 불법과격, 폭력시위 현황, 불법폭력시위발생비율의 통계자료이다.

<표 2> 불법 과격, 폭력 시위 현황⁷⁾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집회·시위 횡수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368	11,094	13,406
불법·폭력 시위	105	215	118	134	91	77	62	64	89
화염병 시위	횡수	7	23	8	14	3	5	3	-
	개수	746	2,453	457	2,223	105	99	8	-

과격한 대규모 집회시위 장면은 종종 매스컴을 통해 전세계에 방영되어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지난 촛불시위 사태는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영되었다.

7)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6_01.jsp(2009. 9.30 검색).

지난 2005년 12월 홍콩에서 WTO반대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위해 반 WTO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대규모 시위대가 각목과 죽창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과격한 시위문화가 CNN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⁸⁾ 홍콩은 특별한 폭력시위 사례가 없으며, WTO 반대시위가 유일한 폭력시위였다.⁹⁾

2. 도심교통 마비

대규모 집회시위는 도심에 집결한 과다한 참여인원으로 인해 도시의 교통을 혼잡케 하며, 때로는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마비를 일으킨다. 대규모 도심 집회시위 신고범위에서 벗어난 전 차로 점거 등의 교통 방해로 일반시민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실정이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과업시위에 대한 설문조사 ‘(2006)에서 과업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전체 응답자가 48.3%이고, 이중 72.9%가 교통체증을 지적하였다.¹⁰⁾ 2007년 한 조사에서도 집회시위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82.8%에 달하고,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시위금지를 결정한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서 73.7%가 찬성하여 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국민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는 불법적인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방해에 대해 경찰이 현장조치를 강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한 도로점거, 교통마비, 고속도로 점거, 열차 정

8) 2005년 12월 17일 반WTO 집회 당시 홍콩 경찰에 의해 1,001명이 고립 연행되었다. 홍콩 재판부는 12월 30일 반WTO 집회에 참가해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됐던 윤일권 순천농민회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9)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각국의 집회시위 문화 비교 검토」(경찰청, 2006), 8면.

10) 차문중,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포럼 제173호」(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7. 1), 3-4면.

11) 윤시영,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폭력적 특징과 대처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2007년), 241면.

지 등 교통방해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2009년 11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13개 농민단체 3만여명(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은 여의도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 집회 후 전농 회원 500여명은 대회를 마친 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200여명이 거리투쟁을 전개해 경찰과 대치했으며, 광화문에서는 경찰과 대치하다 도로 점거 혐의로 농민 15명이 연행되었다.¹²⁾

2007년 한·미 FTA 최종 협상을 앞두고 열린 서울 도심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민과 노동자 등 만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가 끝난 뒤 곧바로 도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무너지고, 도로 위 차량들은 완전히 가로막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마저 꼼짝못하였다.¹³⁾ 도심권 집회시 거리행진과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성 가두진출을 통한 불법도로점거 등 대규모 도심 집회로 인한 교통불편 야기로 시민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2006년 4월 15일 수입쌀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전남지역 농민과 노동자, 대학생 등 2천여명의 대규모 시위대는 전남 여수 신항으로 이동 중 서울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를 2~3분가량 가로막아 세웠다.

최근 농민단체들이 수확한 나락을 농협도정공장과 지자체 청사 앞 노상에 쌓아놓고, 도로를 점거해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가 하면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과격한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주최측에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는 자제하도록 행정

12)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70520>(2009. 11.18 검색).

13) 「YTN」, 2007. 3. 25.

지도를 강화하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도심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리적 폭력양상은 없지만,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경우,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되는 도심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 등 집회시위 현장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3.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증가

대규모 집회시위는 때로는 과격한 폭력집회시위로 전환되거나, 집단이 기주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기한 장기 시위로 돌입할 때도 있다. 장기화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막대하다.

경찰청이 지난 촛불집회시 대규모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인해 경찰관 50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경찰버스 173대가 파손되고 차량·장비 2,275점이 파손되거나 피탈당하는 등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¹⁴⁾ 또한 총 1,649명(구속 43명, 불구속 1,440명, 즉심 56명 등)이 사법처리되었고, 피해액은 5억 1,700만원('08. 8)으로 집계되었다.¹⁵⁾

그동안 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관은 2000년 311명, 2001년 304명, 2002년 287명, 2003년 749명,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2006년 817명, 2007년 202명으로 나타났었고, 2008년 501명 등 인적 피해가 상당히 큼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집회시위 현황

14) 경찰청, 『2009 경찰백서』, 앞의 책, 27면.

15) 위의 책.

내 용	연 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집회시위(건)	11,338	11,036	10,368	11,904	13,406
120개 부대 이상 동원(일)	37	14	53	-	-
불법폭력집회건수(건)	91	77	62	64	89
경찰부상자(명)	621	893	817	202	577
사범조치인원	2,837	3,525	9,466	-	-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한 FTA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3조 7,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2008. 9)은 추정하고 있다.¹⁶⁾

2007년 한해동안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5조8천270억원이나 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다.¹⁷⁾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은 1만1천904건의 합법 집회시위와 64건의 불법시위를 분석한 차성민(한남대 법학과)·강신원(순천대 사회복지학부)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과급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만1천904회의 합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천731억원에 달한다. 반면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조8천27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1회당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면 91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나오며, 불법 집회와 합법 집회에 사용된 사회적 비용을 대비할 경우 불법집회가 2천90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회적 비용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경찰력 투입에 따른 비용, 시위 현장주변 업소의 영업 손실, 교통 정체로 인한 제 비용, 국민의 직간접 피해 등을 합쳐 추산된 것이다. 여기에 국가적 대외 이미지 손실과 주요 국정과제

16) 위의 책, 13면.

17) 「경인일보」, 2009. 2. 19.

수행 지연 등의 피해를 더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문제는 직접비용보다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적, 국민적 피해 또한 엄청 크다는 데 있다. 시위 현장부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대외 이미지 손실,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및 대기오염 증가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시위 다발지역의 소매업·서비스업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불법시위 1회당 영업점 피해는 2천640만원, 연간 피해액이 3천160여억원으로 산출됐다.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69%에 달한다는 연구결과 보고였다.

2006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5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다.¹⁸⁾ 현대자동차가 2006년 12월 초까지 11차례 파업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11만 5,124대의 생산손실로 1조 5,907억원에 상당하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¹⁹⁾

2006년 11월 한·미 FTA 반대 시위로 충남경찰청은 3,990만원, 광주시는 1억 8천만원과 공무원 7명 부상, 강원도는 1억 5천만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²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6년 12월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교통체증 비용, 영업손실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 기준 12조 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806조 6천억원의 약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²¹⁾

다음으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장기화된 집회시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8)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논총 제24집』(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8), 102면.

19) 『서울경제』, 2006. 12.8.

20) 경찰청, 『OECD 등 주요 외국의 불법집회시위 대응 현황 자료집』(서울: 경찰청, 2009), 5면.

21) 한국개발연구원,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6).

2008년 촛불집회는 5월 2일에서 8월 15일까지 106일간 전국적으로 2,398회에 걸쳐 약 93만2,6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서울지역에서만 58만900여명이 참가하였다.²²⁾

2007년 상반기에는 한·미FTA반대시위, 하반기에는 타워크레인 파업, 전국적인 이랜드 노사분규 집회와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전국단위 3대집회가 전체집회중 11%를 차지하였다.²³⁾

2006년에는 약 1개월동안 진행되었던 대구경북 건설노조 파업의 시위 외에, 2006. 4 ‘한·미FTA 저지 범국민’을 결성하여 1년동안 한·미FTA 반대시위를 대규모로 전개했으며, 연 1,449중대와 경찰관 23,303명을 동원 배치하여 경비활동을 하였다.²⁴⁾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3월 18일부터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5월 27일까지 71일간 SK공단지역과 울산 시가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회시위를 전개하였고 특히, 죽봉·3~5m 길이의 쇠파이프·수레전차 등 무기 수준의 폭력시위용품 행사 및 사내 정유탑과 건설현장 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시일이 경과할수록 점점 불법폭력화 양상을 보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²⁵⁾ 경찰은 연 1,755개 중대와 물포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불법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불법행위자 총 1,522명을 현장검거하거나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하였다.²⁶⁾

대한주택공사의 오산·세교 택지개발 추진 관련, ‘전철연’ 회원 등 30여명은 상가택지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2005년 4월 16부터 6월 8일까지 54일간 오산 세교지구 빌라 옥상 및 망루에서 농성이 계속되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철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들은 망루 내에

22) 경찰청, 「2009 경찰백서」, 앞의 책, 247면.

23) 경찰청, 「2008 경찰백서」(경찰청, 2008), 286면.

24) 위의 책, 307-308면.

25) 경찰청, 「2006 경찰백서」(경찰청, 2006), 400면.

26) 위의 책.

가스통, 휘발유, 공병, 죽창 등을 비치하고 화염병·돌·병 등을 투척하여, 용역직원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²⁷⁾ 경찰은 사다리차·소방차·포크레인·대형크레인 등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며 불법행위자 전원을 검거·연행하여 사법처리 하였다.²⁸⁾

Ⅲ. 대규모 집회시위의 유형

1. 지역이익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

대규모 집회시위의 유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지역이익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이다. 지역이익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는 대개 지역사회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정부와 지방자치제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반대와 같은 경우, 농민은 자신들의 지역적 차원이 아닌 생존권적 차원의 문제라며, 전국 농민이 한 곳에 모여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 유형의 사례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충청주민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7) 위의 책, 401면.

28) 위의 책.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충청 주민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집단 식발식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하는 등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²⁹⁾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일대 주민으로 구성된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600여 명은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했다.

연기군 출향민과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행정도시 범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은 1,000여 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전시기에 지역이익을 둘러싼 대표적인 대규모집회시위는 핵폐기장을 둘러싼 부안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였다. 지난 2003년 부안 원전센터 찬·반 주민투표 실시 시기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책위 간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주민들의 시위가 점차 격렬해졌다.³⁰⁾ 여기에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와 함께 여러단체도 함께 참여하여 유혈 폭력시위를 가져왔고, 결국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이 백지화되었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재개발정책으로 인한 원주민과 세입자 중심의 시위나, 환경오염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 반정부성향의 대규모 집회시위

29) 「노컷뉴스」, 2009. 11. 10.

30) 「국민일보」, 2003. 11. 18.

반정부적 성향의 대규모 집회시위는 여러 집회시위유형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정권이 권위주의적이거나 억압적인 체제일수록 반정부투쟁 성격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민주화와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나 분배적 정의 실현을 위한 부의 재분배과정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건국이후 4.19와 5.16을 거치면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 6,000여명이 참가한 대전 집회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5m짜리 족장 1,000여개로 무장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³¹⁾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시위 가담자 457명 가운데 123명은 훈방했으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 등 33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경찰의 피해상황을 집계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09년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우리는 현정권의 노조 말살 정책에 맞서 복수노조 자율교섭과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했다.³²⁾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이번 노동자대회의 3대 의제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 말살정책 분쇄,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현정권 퇴진투쟁

31) 「해럴드경제」, 2009. 5. 18.

32) 「통일뉴스」, 2009. 11. 8..

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주말 연 20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6자회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반MB공투본은 "현정부는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99% 서민의 돈을 1% 부자에게 몰아주고 있다"며 "현정부는 1% 부자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진보진영을 겨누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정부는 민주국가 파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정부는 남북대결과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미전쟁동맹 반대'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들끓고 있다.³³⁾ 지난달 25일 노·사·정 6자회의 결렬 이후 협상테이블에서 빠졌던 민주노총이 '동투'를 선언하였고, 합의안 도출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조합원들의 반발로 내분을 겪는 등 점차 확산되었다.

이처럼 반정부적 성격의 대규모 집회시위는 주로 야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민주노총과 NGO 등에 의해 현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이슈는 민중생존권 쟁취, 노조말살정책 반대,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총파업 총력투쟁, 한·미FTA 반대 등 현정권 퇴진투쟁 등을 중요 투쟁목표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적 대규모 집회시위에 이어, 반미투쟁의 대규모 집회시위도 많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2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지 지방도로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신호순·심미선 양이

33) 「서울신문」, 2009. 12. 7.

의정부 주둔 미군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광화문 촛불 시위로 이어졌었다.

3. 국가협상반대의 대규모 집회시위

국가협상반대의 대규모 집회시위는 FTA협상이 논의된 지난 정권부터 시작하여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확산된 시위유형이다. 한·미FTA반대 대규모 집회시위는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이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국민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대규모 집회시위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2006년 4월 15일 수입쌀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전남 여수에서 열렸다. 전남지역 농민과 노동자, 대학생 등 2천여명은 수입쌀 하역을 막기 위해 여수 신항으로 이동했었고, 이동 과정에서 오후 3시 55분쯤 서울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를 2~3분가량 가로막아 세우기도 했다.³⁴⁾ 시위대는 수입쌀이 하역된 야적장으로 접근하기 위해 철조망을 부수기도 하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는 등 격렬히 항의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전국 30여개 농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문화회관에서 ‘2008. 11. 25 농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했었다.³⁵⁾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과 재야인사 등 1만1000여명(경찰 추산, 주최측 3만여명)이 참가해 ‘NO FTA’ ‘한·미 FTA반대’ 등 피켓을 들고 고위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및 한·미 FTA 국회 비준 상정 등을 반대했다. 정부와 국회에 한·미 FTA

34) 「노컷뉴스」, 2006. 4. 15.

35) 「파이낸셜뉴스」, 2008. 11. 25.

국회비준 포기, 농어업생산비 안정화 및 농·어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안정적 농어가소득 보장 대책,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었다.

참가 농민들은 본 집회를 마친 뒤 문화마당 1문-여의도관광호텔-삼희빌딩-문화마당 6문에 이르는 2.2km구간을 행진하였으나, 경찰과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의경 105개 중대 9000여명과 물대포 9대 등을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며 국회(파천교~서강대교 남단)와 한나라당사 등에 유동차벽을 설치, 농민들의 집단진입을 차단했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전국 623개 출발지 및 집결지 등에서 주류 226박스, 피켓용 각목 10개, 마대 115개, 벗짚 2단 등 모두 607점의 불법 시위용품을 회수했다.

국가협상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는 반미, 반일 등 특정국가에 대한 반대투쟁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

4. 외국의 대규모 집회시위 유형

가. 지구온난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

최근 세계의 중요 이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엄청난 자연 대재앙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대해 세계 여러나라는 선진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역할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시민의 대규모 집회시위도 가장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회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

회 개막을 앞두고, 유럽 각 나라 수도에서 환경을 구하자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³⁶⁾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110개국의 정상들은 대부분 회의 막판에 참여하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1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영국에서는 지난 주말 4만명의 시위대가 템스강을 따라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기후 혼란을 멈추라(Stop CLIMATE Chaos)’고 외쳤다. 런던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2만 명이 모였고, 프랑스 파리와 보르도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³⁷⁾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영향력있는 협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자들은 기후변화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세계 수백만여명의 빈민들을 위해 이번 협약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협약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파리, 브뤼셀, 더블린, 스톡홀름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동시 집회가 열려 10만여명이 참가했지만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됐다. 그린피스는 코펜하겐 항구에 선박을 정박하고 ‘우리의 기후, 우리의 미래, 당신들의 결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코펜하겐에서는 12일 1만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모겐스 라우디르센 코펜하겐 경찰청장은 “덴마크 경찰의 절반이 넘는 6,000명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중무장한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차량을 검색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치안에만 1,500억 원을 쏟아부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 집

3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208587&cp=du>(2009. 12. 8 검색).

37)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73316&category=mbn00006>(2009. 12. 8 검색).

회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구촌의 녹색성장을 주도해가고 있다.

나. 반정부투쟁의 대규모 집회시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의 주류는 역시 반정부적 성향의 집회시위이다.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주장하면서, 정권의 장기집권 저지 및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란, 니카라과, 세네갈 등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대선 이후 이란 야권은 선거부정을 이유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별히 이란은 '학생의 날'(Student Day)을 계기로 야권에 의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당국이 반정부시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란 학생의 날은 1953년 12월 7일(이란력 아자르 16일) 팔레비 왕조의 보안군이 3명의 학생들을 살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미국은 팔레비 왕조의 왕(샤)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모하메드 모사데크 수상을 몰아내는 친위 쿠데타를 지원했다.³⁸⁾

중미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지난 11월 21일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집권연장 시도에 저항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간 유혈 충돌로 최소 12명이 다쳤다. 5만명에 이르는 시위대는 이날 마나과 거리를 행진하며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이 헌법규정을 어기고, 2011년 대통령 선거 재출마 움직임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좌익 게릴라 출신으로 지난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을 이끈 오르테가는 2006년 대선에 승리해 권좌에 복귀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친정부 시위대가 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날 거리에 모인 시위대는 그에 훨씬 못미쳤다.

3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20518015330829>(2009.12. 8 검색).

2009. 11. 6일 수도 다카르 시내 메디나 중심도로에서 세네갈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렸다.³⁹⁾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연합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압둘라이 와드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부패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세네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이처럼 사퇴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지난 9년간 현정부 임기 내내 각종 국책사업에서 부정부패 의혹과 대통령직 세습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실업과 빈곤, 교육 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일명 '세구라 게이트'를 통해 분출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은 선거부정과 부정부패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부의 재분배, 실업과 빈곤 등 금융위기, 환경오염, 지역갈등과 국가간 갈등 등으로 인해, 모든 국가의 반정부 성향의 대규모 집회시위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집회시위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의 월가에서 출발한 실업 사태는 경기 침체와 함께 전 세계 각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며 유례없는 '해고 도미노'를 일으키고 있다.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각국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고용 축소 등 몸집 줄이기에 여념이 없다. 그 과정에서 배출된 다수의 실업자와 젊은 구직 포기자들은 사회 불만 세력으로 자리잡으며 국가를 한 순간에 혼란과 소요로 몰아갈 수 있는 '사회적 뇌관'으로 변해가고 있다.

39)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1108105407019&p=yonhap>(2009. 10. 30 검색).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단순한 사건이 폭동으로, 국지적 폭동이 전국으로, 또 세계적 소요로 이어지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2008년 12월 발생한 그리스 반정부 시위 사태는 강한 '인화성'을 보이며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변 유럽국가로 빠르게 옮겨 붙었다.⁴⁰⁾ 당초 아테네의 한 빈민가에서 한 15세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으로 촉발된 이 시위 사태는 경제 불안과 현정권에 대한 불만 속에 그리스 전역 12개 도시로 번져나갔으며,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졌다. 시위 주도 세력은 그리스의 20대 청년층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백수인데다가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한 달 평균 임금이 700유로(약 126만 원)에 못 미쳐 '700유로 세대' 라는 자조적인 이름을 얻었다. 그리스는 인구 4명 중 1명에 달하는 200만 명이 빈곤층이다. 여기에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그리스의 실업률은 올해 두 자릿수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시위대가 그리스 전역의 은행 150곳 이상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위가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프랑스와 유럽, 미국 등 약 20개국에 동조 시위 사태를 불러왔다.

예멘의 남북 분리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6일 예멘 남부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예멘 남부 달레시에서는 1만여 명이 행진을 벌였고 라레, 아브얀주에서도 각각 수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⁴¹⁾ 집회 참가자들은 통일 이전 남예멘 국기를 흔들며 독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예멘 남부 주민들은 1990년 북예멘과 통일이 됐지만 중앙정부의 차별정책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반

40)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106104922803&p=newsis> (2009. 9.30 검색).

41) 「연합뉴스」, 2009. 10.6.

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예멘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데 대해, 집회 참가자들은 아랍연맹이 남예멘의 독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을 만난 아므르 총장은 "예멘의 통합은 예멘 뿐 아니라 아랍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예멘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서로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멘 남부에서 반정부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부 사다 지역에서는 지난 8월 11일 이후 예멘 정부와 시아파 알-후티 반군 간 내전이 계속되면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11월 15일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유럽연합(EU)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⁴²⁾ 시민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총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아이슬란드의 EU 회원국 지위부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게이르 하르데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이슬란드의 경제가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타고 태국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대의 숫자가 3만여명을 넘어섰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 (UDD) 소속 반정부 시위대는 일주일 넘게 정부청사를 봉쇄하고 '의회해산' 과 '조기총선' 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였다.⁴³⁾ 이들이 현정부 퇴진과 탁신 전 총리의 재집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경제난에 따른 사회불안과 군부 독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태국에선 경제난으로 대량해고와 빈곤 등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탁신 전 총리를 몰아내고 2006년 집권한 군부가 민의와 동떨어진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view.html?cateid=1044&newsid=2008111616441601&p=newsis> (2009. 11. 16 검색).

43) 「한국경제」, 2009. 12.9.

실업자와 연금생활자, 대학생 등 아르헨티나 시민 수천명이 페르난도 델라루아 전 대통령 중도사퇴 및 유혈 소요사태 1주년 기념일인 20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지속되는 시위에서 시민들은 일자리와 빵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델라루아 전 대통령의 중도사퇴와 폐소화 평가절하, 예금동결 등 국제 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초긴축정책이 지속되는데도 1년 가량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분노를 터트렸다. 아르헨 정부는 불상사에 대비해 1만2천여명의 경찰을 배치했으나 시위대와 무력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태국 등의 금융위기와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집회시위, 그리스의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로 인한 대규모 집회시위, 그리고 예멘의 남북통일로 인한 경제난 심화에 분노한 대규모 집회시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IV. 경찰의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 방향

1.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2009년 12월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비상상황실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연말에 파업을 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

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코레일 사측이 '불법 파업과의 타협은 없다' 며 강하게 대응한 것이 철도노조의 반정부 투쟁을 중단시켰다.

현정부는 섬기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고도의 신뢰사회 구현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정책 방향으로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탈법과 편법 경향의 사회가 이념적·지역적·경제적 갈등을 극복하고, 법·원칙·상식에 기반한 사회질서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및 국민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집회, 시위의 관리 기본 방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부득이할 경우 사후 사법조치)으로 한 법집행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모든 불법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찰은 새정부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과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적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억제에서 자율·보호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준법적인 대규모 집회시위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지켜져야 한다. 집회 주최자 절반 이상이 평화적 집회시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면, 일반시민과 경찰관은 10%대만이 동의⁴⁴⁾하고 있는 점에서 아직도 폭력시위는 통제하에서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경찰은 1999년 3월 “신집회시위 관리대책”을 도입하여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진압경찰위주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근무복경찰과 여경 및 교통위주로 배치하고, “무최루탄 원칙”을 선

44) 성용은, 최관, “선진 각국의 집회시위 실태와 경찰대응의 비교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0호,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2006), 96면.

포하였으며, 주요 도로에서의 차도행진을 허용하였다. 이는 집회시위 대응 방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되었다.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를 통제 대상이나 잠재적 불법 행위자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정부에서 집회는 주최측의 자율관리에 맡겨두고 경찰은 집회참가자와 시민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불법 폭력시위가 2006년에는 전체시위의 0.6%, 2007년 전체시위중 0.5% 등으로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일부 과격폭력시위가 계속되고 경찰 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6년을 「평화시위 정착 元年」으로, 2007년에는 이를 넘어서 「평화적 준법시위 확립」을 목표로 삼고 대응 방식을 전향적으로 전환하여 대처하였다.

현정부에서 경찰은 2008년 1월 14일 불법시위 진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⁴⁵⁾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는 전원 연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새로운 불법폭력집회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현장에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제시하였다. 경찰은 소극적인 방식의 대응에서 앞으로는 소규모(7~8명)로 구성된 기동단을 구성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연행하는 데 주력할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또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휘두르며 심한 폭력행위를 하는 시위대에게는 전기충격기, 최루액, 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촛불집회시위에서 폴리스라인은 완전히 무너졌다. 폴리스라인은 경찰의 방어적 차원의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의 생명선이다. 이러한

45) 「조선일보」, 2008. 1. 15.

질서유지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가 짓밟혔다는 것이며,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며 위기 상황인 것이다.

2.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위 관련 민사소송은 시위 진압 도중 입은 부상이나 피해에 대해 시위 참가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위 진압 도중 부상한 경찰관이 시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위대를 상대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이번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사상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것이 노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집회에서 경찰버스와 진압장비를 파손한 일부 참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2천43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2007년 홈에버 상암점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2천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 전국적인 시위에 대해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2006년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 시도민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진압봉 23개와 방패 21개, 무전기 5대 등이 파손됐다'며 집회를 주도한 3개 단체와 가담자 40명을 상대로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광주시도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농,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상대로 시청사 파손 등에 대해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서 법원은 광주시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피고들은 직거래장터를 열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는 등의 사회봉사 명령에 참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화해를 권고했고, 시와 피고측은 이를 수용해 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장비 파손문제를 둘러싼 손해소송과 관련,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광주지법 민사26 단독 김승휘 판사는 12일 정부가 2006년 광주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주도한 4개 단체와 한·미FTA협상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 상임대표 허모(57)씨 등 집회 참가자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750만원을 원고 측에 변상하도록 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⁴⁶⁾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는 대규모 FTA 시위가 발생한 지 2년4개월만이였다.

이처럼 시위 주최 측이나 참가자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는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⁴⁷⁾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초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의 개막 행사가 시위대의 무대 점거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시위 참가자 9명을 상대로 2억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경찰에 폭력을 휘둘러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배상보다는 시위가 과격해지거나

46) 「광남일보」, 2009. 3. 12.

47) 「연합뉴스」, 2009. 6. 26.

불법으로 흐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은 시위 참가자에게 형사처벌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폭력시위가 우려되는 도심의 대규모 집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시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판결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해당 집회를 분석·평가하여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사례로는 단위사업장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국가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전·의경 폭행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등 다양한 불법 행위 유형에 따라 제기되고 있다.⁴⁸⁾ 이 외에도 도로행진·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음공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경찰 기물파손과 경찰관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다.⁴⁹⁾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하겠다는 정부·공공기관과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민·노동단체의 공방은 민사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경찰은 준법집회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민관공동위원회 등 적극 참여, 시민

48) 유지웅, “집회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6), 7-13면.

49) 위의 글, 14-20면.

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평화적 집회 시위 홍보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력시위 방지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8년 3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경찰·학계·언론인·시민단체 회원 등 360명이 참석하여 ‘경제살리기와 법질서 확립 세미나’를 개최하였다.⁵⁰⁾ 또한 시민참관단 및 다양한 대화채널 추진⁵¹⁾이나, 주요 집회 개최당사자들과 준법시위협약(MOU)을 체결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시위행위에 대한 생생한 동영상을 통해서도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변화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에 따라 합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불법집회시 초기에 적극 대처해서 교통방해 등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현상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경찰은 물론 집회참가자 및 언론 등 누구나 평상시에 쉽게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단계적 대응기준을 만들어 집회시위 개최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경찰이 대응하는 정도를 미리 알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예상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함으로 인해 대부분 폭력사태로 연결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⁵²⁾ 집회시위 단계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판단기준과 경찰 대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50) 경찰청, 『2009 경찰백서』, 앞의 책, 28면.

51) 2008년 시민참관단 운영실적이 693건이다.

52) 이창무, “각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 미국·영국·독일·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호, 서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31면.

셋째, 경찰은 법집행 기준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각종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대응 수준이 과잉 대응이며, 강압적이고 폭력적 대응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⁵³⁾

넷째, 대규모 집회시위를 대비한 각종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경찰관의 법집행도 이런 장비를 통해 더욱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행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과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장비도 필요하다. 또한 불법시위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를 위한 첨단 채증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신종 장비들은 명확한 운용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5월 31일 촛불시위시, 서울광장의 4만여명 시위대가 도심도로를 무단 점거하였고, 특정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과격한 폭력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경찰은 물포의 사용 계획을 사전에 경고, 노약자, 여성, 기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고지하였고, 규정된 사용 요건과 절차, 살수방법을 준수하여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하였다.⁵⁴⁾

다섯째, 현재까지 집회시위는 병역자원인 전의경이 부대원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를 통해 대응해 왔다. 직업 경찰관에 비해 물리적 충돌과 폭력의 상승작용이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⁵⁵⁾ 직업 경찰관에 의해 집회시위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효율적인 경력 운용과 함께 보다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여섯째, 경찰은 변화된 불법시위 양상에 따라 주요 경비지역을 위주로 경찰력을 배치하고 사회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고 꾸준히 훈련해 나가야 한다. 경비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한 고도의 치안기법이

53) 이창무·남재성, “경찰의 집회·관리에 대한 인식태도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서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5), 110면.

54) http://www.police.go.kr/pop_3.htm(2009. 9. 30 검색).

55) 이창무, 앞의 글, 29면.

필요한 종합적 업무임을 감안하여 경비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폭력시위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전파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폭력진압이라고 보도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여 바로 잡아야 하며, 불법폭력시위의 폐해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조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여덟째, 집회가 예정된 경우 일반시민에게 방송, 전광판, 입간판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하여 혼잡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홉째,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및 사후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집회개최 前에는 폭력시위용품을 차단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사전에 준법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법준수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 불법필벌이라는 원칙 아래, 폭력시위자가 반드시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집시법도 배상명령 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법무부 방침과 관련, 불법시위자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⁵⁶⁾ 집회장소 주변상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관행이 성립된다면 불법폭력시위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후 사법처리는 엄정해야 할 것이다.

열 번째, 현장에서의 강력한 물리적 대응은 자칫 사태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⁵⁷⁾ 선진국에서의 현장에서의 집회관리 방식은 점차 탄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도한 관용은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⁵⁸⁾ 이

56) 「인터넷 한겨레 뉴스」, 2007. 6. 25.

57) 이창무, 앞의 글, 26.면.

58) 윤시영, 앞의 글, 244면.

는 준법시위 문화정착과 법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⁵⁹⁾

59) 이창무. 남재성, 앞의 글, 140면.

V. 결 론

새 정부 기본 방침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집회시위에 대처하는 경찰관의 대응의식 전환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은 범위반시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합법보장·불법필벌이라는 대원칙 아래 현장에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히 대응하되, 경찰권 행사의 원칙 확립,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현장에서의 법집행, 준법의식 및 합법적 법집행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평화적 준법시위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 각 분야와 모든 시민이 이제는 모든 문제를 법적 질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준법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준법의식 및 평화적 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와 민간간의 갈등해소 장치의 정착, 의사표현이나 주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의 조정, 폭력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전반의 인식, 언론의 책임있고 공정한 보도태도, 시민참관단 등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시장치의 정착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준법시위 홍보 및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집회시위가 불법 폭력시위로 전환되었을 때는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까지 추진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작년 법무부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 명령제도⁶⁰⁾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불법시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권리구제가 없었고, 법 개정 추진은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었다. 교통혼잡비 부담 등의 불이익 조치도 추가되어야 한다.

앞으로 폭력 집회시위를 촉발하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폭력시위 전력자나 단체의 집회참가를 제한하는 법 적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폭력시위자 조기석방 경향, 사용자측의 분규 해결시 고소·고발 취하, 선처 부탁하는 경향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폭력시위 전력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전문 시위대에 의한 과격한 폭력시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규모 집회시위를 왜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답이 있을 것이다. 시위자들이나 시위단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집회시위 방법외에는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초고속정보화시대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무언

60)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선고하면서 즉시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 등 주로 재산 범죄에 국한되었다.

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시위를 갖고자 하는 아날로그시대의 사고방식 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잘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 해 몇조원씩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대규모 집회시위를 통해서 얻어야만 되는 모든 국민의 목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전 시대의 민주화투쟁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와 같은 그러한 거국적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심지어 집회시위자나 이를 막는 경찰관이 과격한 폭력시위현장에서 지난 용산참사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벌어진다면, 그 생명을 대신할 만한 어떠한 가치나 명분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규모 집회시위가 행여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전개되는 것이라면 집회시위자 소수를 위해 국민대다수가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제는 방송매체나 인터넷, 아니면 국회 등 토론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분명하게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 논쟁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일보한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규 외 공저, 「경찰경비총서」, 경찰대학, 2005.
- 경찰청, 「경찰서 경비과장 매뉴얼」, 경찰청, 2005.
- _____,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 경찰청, 2005.
- _____, 「2009 경찰백서」, 경찰청, 2009.
- _____,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 _____, 「2007 경찰백서」, 경찰청, 2007.
- _____, 「2006 경찰백서」, 경찰청, 2006.
- _____, 「선진 일류경찰을 향한 액션플랜」, 경찰청, 2008.
- _____, 「OECD 등 주요 외국의 불법집회시위 대응 현황 자료집」, 경찰청, 2009.
-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각국의 집회시위문화 비교 검토」, 경찰청, 2006.
- 경찰청·한국경찰학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과제」, 경찰청·한국경찰학회, 2006.
- 대한변호사협회, 「2007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2007.
- 성용은, 최관, “선진 각국의 집회시위 실태와 경찰대응의 비교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0호, 치안정책연구소, 2006.
- 양명곤, 「프랑스경찰의 시위진압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04.
- 유지웅, 「집회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6.
- 윤시영,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폭력적 특징과 대처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2007.
- 이창무, “각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 미국·영국·독일·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

학회보」 제26호, 2007.

이창무·남재성, “경찰의 집회·관리에 대한 인식태도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2006. 5.

최성재·류재혁, 「2005 경찰경비론」, 경찰대학, 2005.

한국개발연구원,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Ben Brown, Policing Crowds and Controlling Collective Violence : An Examination of Police Crow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school of Criminal Justice ; The University of Texas, 경찰청 주최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6.

Mahesh K. Nalla, “미국에서의 시위와 시위대응경찰활동에 대한 평가”, 「한·미·일·중 국제학술세미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과제」, 경찰청·한국경찰학회, 2006. 11.

책임연구보고서 2009-16

대규모 집회시위유형 비교 연구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